

편입생 학점 및 성적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1999.01.27.
개정 2000.04.12.
개정 2004.1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5.
개정 2018.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16조에 의한 편입학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편입학 시기는 학칙 제16조 (편입학)에 의하여 허가하며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지 않은 때라야 한다.

제3조(범위) 삭제

제4조(정원) 편입학자의 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제5조(자격) 편입학자의 자격은 학칙 제16조(편입학) 기준에 의한 이상을 이수한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취득학점이 16학점 이상인 자)

제6조(방법) 편입학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 동일학과순, 평점평균순, 취득학점순, 연장자순으로 선발한다.

제7조(학점인정 범위)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삭제

제8조(편입학생 수강신청) 편입학생의 수강신청은 전적대학에서 인정된 학점을 제외한 소정의 잔여과정은 재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은 해당학년 재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이수한다.

2. (삭제)

3. (삭제)

제9조(졸업) 재학생의 졸업사정 적용에 준한다.

제10조(성적)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 대학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11조(인정학점 취소 및 포기) 인정받은 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착오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